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 10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7. 2
- 다. 상정일자 : 97. 2(제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 수 철
- 나. 제안사유
 -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의 신속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고소작업차 운전원 및 인력증원 승인에 따른 정원조례개정
- 다. 주요내용
 - 정원의 총수(안 제2조)
 - 군본청 : 243명 → 244명(기능직 8등급 1명 증)
 - ※ 군 본 청 : 244명
 - 의회사무과 : 18명
 - 직속 기관 : 159명
 - 사 업 소 : 25명
 - 읍면(출장소포함) : 315명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민 병 향)

- 동 조례 개정안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 구입한 고소작업차 운전원 정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(자치 12200-1234, 96. 7. 20)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- 김성인 위원 반대 의견으로 거수처리 결과 김성인위원 반대 1표, 문팔갑 간사위원 찬성 1표, 김경남위원 찬성1표, 양동복 위원장 찬성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첨 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 - 9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7. 27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, 가로수의 신속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다리차(고작업차)를 구입 그에 따른 운전원 1명을 정원 승인 [자치 12200 - 1234 ('96. 7. 20)]

2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
- 자치 12200 - 1234 (96. 7. 20) 호로 지방운전원 인력 1명 정원 승인

3. 주요골자

- 군본청란
재무과에 지방기능직 8등급 (운전원) 1명을 증한다.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중 다음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군본청 : 244
2. 의회사무과 : 18
3. 직속기관 : 159
4. 사업소 : 25
5. 읍·면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15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1. 군본청 : 243 2. 의회사무과 : 18 3. 직속기관 : 159 4. 사업소 : 25 5. 읍·면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15명	제2조 (정원의 총수) 1. 군본청 : 244 2. 의회사무과 : 18 3. 직속기관 : 159 4. 사업소 : 25 5. 읍·면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15명			